



의안번호

제87호

## 지방세 감면 변경 동의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1. 6. 9.

# 지방세 감면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제87호
----------	------

제출연월일 : 2021. 6. 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 19일 의결 동의안(의안번호 제36호)을 변경하여 고급오락장도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2. 주요 변경 내용

- 고급오락장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기 의결된 동의안의 부분단서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삭제

기 준 동 의 안	변 경 동 의 안
※ 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해당되는 자 간의 임대차 계약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	※ 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해당되는 자 간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착한임대인 감면대상에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감면예상액 및 기대효과**

○ 추가 감면예상액 : 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목	적 용 요 건	감면율	감 면 예 상 액		비 고
			건 수	금 액	
재 산 세 (건축물, 토지)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	50%	2	2	고급오락장 중 5% 참여 예 상 시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 50% 미만	임대료 인하율			

※ 감면예상 건수는 2020년 재산세(고급오락장) 부과건수 38건×5%

감면예상 금액은 2020년 재산세(고급오락장) 부과금액 107백만원×5%×감면율(50%)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신청한 자에 한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